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861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관후

피 고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규, 이재철

변 론 종 결 2021. 3. 18.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5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건설 사업

원고는 토목, 건축, 부동산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8.경 부산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B, C블록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각 급수공사비 및 급수공사수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고, 원고는 2017. 8. 31.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급수공사 수수료	합계(원)
1	B블럭	187,443,000	10,399,000	24,000	197,866,000
2	C블럭	235,985,000	10,642,000	24,000	246,651,000
합계		423,428,000	21,041,000	48,000	444,517,000

다.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구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2019. 2.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급수조례’라고만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가.항 및 나.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8.경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급수공사수수료 합계 444,517,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44,51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참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조).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부산도시공사일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2) 하자의 중대 · 명백성 여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과세 처분의 상대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달리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관계 법령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조항의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함으로써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된 부산도시공사임이 관계 법령의 문언 자체로서 분명하고,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다.

나) 이 사건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주택단지가 조성된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바로 그 주택단지를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법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의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택지개발행위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이라도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범위에서는 이미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원인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로 비로소 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비용 발생의 원인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면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수도물을 많이 쓰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자(주택단지 설치자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제도 취지가 유사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에 관하여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하여 온 법리(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2항(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4항)과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그 규정 형식, 문언 내용 등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 규정들은 모두 공공하수도 또는 상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동일한 목적과 취지를 갖는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양자를 달리 규율할 만한 뚜렷한 근거나 법문상 제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급수조례 상 급수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급수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사비부담의 납부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급수설비의 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요하는 신규

급수신청을 하여 기존 수도시설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소속 주민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법인으로서 피고 소속 주민이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급수공사수수료 부과 대상이 '피고 소속 주민'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급수조례 제6조 제1항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례 제12조 제1항은 급수공사비 부담에 관하여 '옥외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인'의 범위를 한정하는 문언이 전혀 없다(위 조례 제13조 제1항은 위 급수공사비의 구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2) 이 사건 급수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기존에 설치한 공공시설인 수도시설의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주민 상호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수익자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1839 판결 등 참조)과 달리, 이 사건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수공사비 및 급수공사수수료는 그 성질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분담금'에 해당하는지도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3)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위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의 급수공사비 및 급수공사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피고 소속 주민’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위 조례 규정의 문언 자체로 명백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위 급수조례 규정과 지방자치법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만 비로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급수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급수공사수수료 부과 대상이 ‘피고 소속 주민’에 한정됨이 명확하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소속 주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에 관하여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주민의 의무’에 관하여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권리·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의 ‘주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위 법 제138조의 ‘주민’이 자연인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문언 자체로 명백하게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아닌 서울시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속 주민’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36조는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18조 제1항은 ‘주소’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정의함으로써 주소에 관한 실질주의의 원칙 하에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 등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법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지인 ‘주민등록지’가 없다), 제18조 제2항에서는 ‘주소가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여 주소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소가 반드시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본점 소재지가 아닌 법인의 영업의 근거가 되는 분사무소, 사업소 등만 소재하더라도 실제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기도 한다.

③ 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서 주민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분의 납세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규정(지방세법 제76조 제2항)하고 있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지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9조)하고 있어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지방세 납세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면서 피고에 생활 및 업무의 거점을 마련하고 피고의 재산 및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을 통하여 건축, 토목공사에 필요한 수도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사실상 피고 소속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피고 소속 주민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 건축주는 신축 공동주택을 완공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는바,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을 이용할 뿐 아니라 신축된 공동주택의 개별 구분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에 기존 상수도시설이 연결되어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으로써 해당 주택을 제대로 된 가치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또한 크다.

라. 이 사건 청구의 당부 및 인용 범위

1)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부분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당연무효인 위 각 부과처분에 따라 2017. 8. 31. 피고에 423,428,000원(= 187,443,000원 + 235,985,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23,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과 같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2) 각 급수공사비 등 반환청구 부분

앞서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이승연, 판사 김동호